

**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** (제50조제1항 관련)

구분		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		
		직 군	직 렬	직 류
1. 국가 공무원	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1항 및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제1항·제4항	1) 행정	방호	방호 경비
			2) 기술	간호조무
		운전		운전
		등대관리		등대관리
		위생		위생 사역
		조리	조리	
	3) 우정	우정	우정	
	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국회인사규칙」 제4조제1항	1) 행정	방호	방호
			안내	안내
		2) 기술	운전	운전
			조경	조경
			후생	후생
	다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법원공무원규칙」 제4조제1항	1) 사법행정	행정사무	행정사무
			속기	속기
			보안관리	보안관리 보안
			병기	병기
		2) 기술	조경	조경
			환경	환경
			관리	관리 운전
	라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」 제4조제1항	1) 행정	보안	보안
교환			교환	
2) 기술		시설	시설조경	
		방송통신	통신기술	
		관리	운행관리	
마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」 제4조 제1항	1) 행정	방호	방호	
	2) 기술	방송통신	통신사 통신기술	
		운전	운전	

			위생	위생 사역
			조리	조리
2. 지방 공무원	「지방공무원법」 제4조제1 항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 령」 제3조제1항	1) 행정	방호	방호 경비
		2) 기술	위생	위생 사역
			조리	조리
			간호조무	간호조무
			시설관리	시설관리 조례로 정하 는 직류
			운전	운전